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비율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조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 총 55세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등 제외)
당첨자 선정 방법	각 유형별 해당기관에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접수일 인터넷 청약 및 현장 접수 한 자에 의해 당첨자 선정 ※ 해당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명단을 통보한 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됨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상기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으로 상기 내용이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 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본 홈페이지는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와 입주자모집공고 상이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 1877-3447로 문의바랍니다.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철거민
추천기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시청 장애인 정책담당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기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토지보상과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7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필요없음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필요없음	필요없음